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강혜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4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강혜순, 김태욱, 문희성,
안영호, 문기호, 홍영진,
이명녀, 박경흠, 김도운,
정재환

1. 주 문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울산시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일부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한다.

2. 제안이유

- 가.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 또한 커지고 있음.
- 나.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밀폐된 환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큼.
- 다.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함.

3. 송부대상 :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울산광역시장

4. 건의문(안) : 붙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며,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23년 11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54만 3,900대를 넘어섰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28만6,000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 또한 점차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5,061대였던 전기차가 2024년 기준 7,888대로 55%가 늘었으며 충전시설 역시 6,467개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울산 중구의 경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637개 중 약 77%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차 중 발생한 화재는 36건,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2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충남 금산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2월 광역시장 명의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예규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성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예방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화재 예방과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는 충전설비의 안전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상 충전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 개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울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가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노력과 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화재에 취약한 일부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설비 구축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9월 2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